국제개발협력 이슈포커스 -4호-

International Development Issue Focus

발행인: 양진옥 발행처: 굿네이버스 발행월: 2019년 12월

굿네이버스 국제개발협력 이슈포커스는 국내외 주목할 만한 국제개발협력 이슈를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촉구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 정책,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Good Neighbors

아동권리와 국제개발협력

The Rights of the Child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 30주년 제네바 기념행사 현장 모습

Purpose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이행의 중요성과 아동권리 관점의 이해를 제공하고, 특히 한국 정부와 NGO들의 모든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이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Key message |

아동은 어느 사회에서든 빈곤, 불평등, 폭력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존재로서, 모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과 사업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3%를 차지하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 국가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비준한 상태이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들의 정책과 사업이 협력국가의 아동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권리가 전반 과정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요구받고 있다. 또한 아동들이 보호와 수혜를 받는 대상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 의사 표현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체로서 국제개발협력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한 한국 정부와 NGO들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다.

향후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아동권리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제언 :

- 아동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공간 및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민간단체(NGO)들이 지역 내 실질적인 아동권리증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동 및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아동권리 인지 제고를 통한 지역, 국가적 차원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아동 세이프가딩 정책을 도입하고 모든 사업 전반 과정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 내 아동권리관점을 도입해야 한다.

ⓒ Good Neighbors

우간다 걸스앰버서더(여아또래클럽) 활동 중인 여아들이 여아 교육권 관련 정책 제안하는 모습

Situation |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아동의 중요성

아동은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국가들의 전체 인구의 약 33%, 하루 1.90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 인구의 절반(47%)을 차지하고 있다(UNICEF, 2017). 전 세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아동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이 채택 된지 30년을 맞는 현 시점, 30년 전에 비하면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들의 삶은 훨씬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강제이주, 폭력으로 인해 최대 피해를 입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아직 풀어야 할 과제(unfinished agenda)'가 많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기를 끝내는 8가지 지표(The Complete End of Childhood Index)' [1]에 따른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매일 약 15,000명에 달하는 아동이 5세 이전에 사망하고, 전 세계 학령기 아동 6명 중 1명 꼴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으며, 1억 5,200만 명 아동들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5세 미만 아동 1억 4,900만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해 성장 부진을 겪고, 2초마다 여아가 출산을 경험, 1분마다 여아 20명이 결혼을 경험, 아동 75명 중 1명이 분쟁으로 인해 강제 이주를 경험, 매일 전 세계 230명 이상의 소녀와 소년들이 극심한 폭력으로 인해 살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세계 아동 빈곤 현황 [3]

세계 아동빈곤 실태 (아동빈곤율 vs 일반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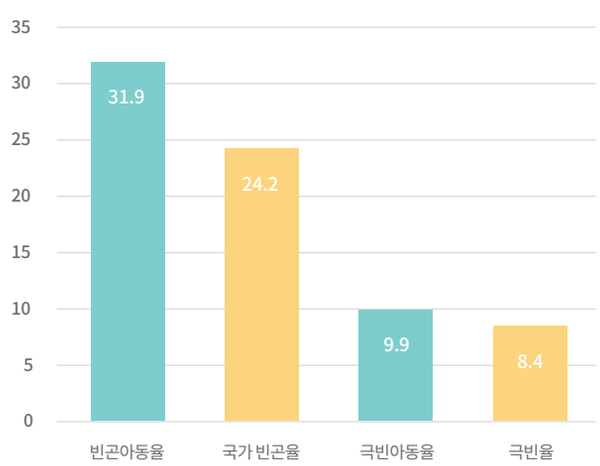

출처: COOKE ET AL. (2015)

하루 1.2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 인구 (연령별) (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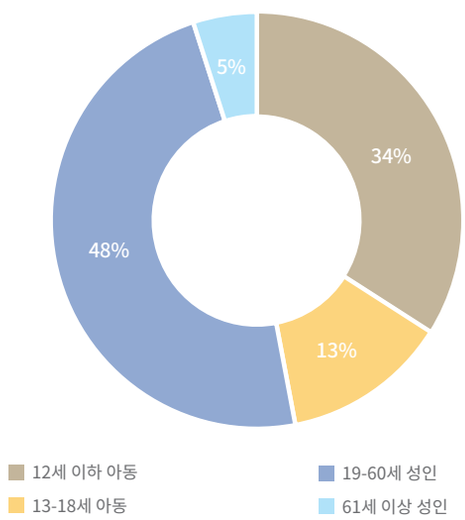

출처: WORLD BANK (2013)

1) 아동기를 끝내는 8가지 지표는 '5세 미만 아동 사망, 아동 영양실조, 학교 밖 아동, 아동노동, 아동조혼, 아동출산, 전쟁/분쟁 강제이주아동, 폭력에 의한 아동 사망'으로 구성된다. (Save the Children(2019). Global Childhood Report 2019)

2)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sc.or.kr/news/reportView.do?NO=70147

3) UNICEF and the Global Coalition to End Child Poverty(2017). A world free from child poverty: A guide to the tasks to achieve the vision. p.106.

실제로 대부분의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활동이 이러한 극심한 아동 이슈들이 발생하는 분쟁국가나 취약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때 직간접적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으면서도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룹은 바로 아동들이다. 이에 따라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의 특수성과 필요를 면밀히 고려한 접근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아동들이 더 이상 보호와 수혜를 받는 대상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권리 증진과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의 중요성이 국제개발협력 내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1)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이행

현재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즉 196개(2019.7. 기준) 국가가 아동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범세계적인 약속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비준한 상태이다. 아동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인 이 아동권리협약은 9개의 인권협약 중 가장 많은 비준국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 NGO, 기업 등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을 수행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개발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협약을 비준하였기에, 비준국가들은 해당국의 아동권리 현황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도록 강력히 권고 받고 있기 때문이다.

> "당사국은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당사국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시행해야 한다."
>
>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권리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

또한 '일반논평 제5호(2003)'에서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비준국의 국제개발협력이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권리기반접근으로 진행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4] 이에 사업 수행 주체들은 아동권리 현황 분석, 아동의 수요, 아동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위한 예방 및 구제조치 등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과 사업들을 수행할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아동권리

아동들의 권리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서는 결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할 수 없다. 2030년까지 SDGs의 가장 기본 원칙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권리 실현을 핵심 이슈로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제 6개의 아동관련 NGO들이 함께 작성한 'A Second Revolution(2019)'라는 보고서에서도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고 우리가 바라는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아동들 자체가 변화의 주체(agents of change)가 되어 행동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2030 아젠다에 아동권리관점(child rights approach)을 반영할 것, SDG 16.2과 연계하여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기후변화 및 환경 위기 상황에서의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세이프가드를 마련할 것,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양질의 교육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5]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 CRC/GC/2003/5. 일반논평 제5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제4조, 제42조, 제44조 6항). p.14.
5) Joining Forces(2019). Thirty years or child rights, and the unfinished agenda(A Second Revolution). p.46.

이렇듯 UNCRC 이행을 위해서 SDGs라는 통합적인 아젠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SDGs는 UNCRC 실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SDGs와 UNCRC 간 관련성에 대해 UNICEF가 정리한 보고서를 보면 SDGs 17개 목표들은 정도의 차이는 다를지라도 아동권리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6] 이중 아동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고려할 수 있는 목표(연관성 25% 이상)는 10개로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10개 목표는 SDG1(빈곤퇴치), SDG2(기아종식), SDG3(건강과 웰빙), SDG4(양질의 교육), SDG5(성평등), SDG6(깨끗한 물과 위생), SDG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10(불평등 감소), SDG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16(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이다.

SDGs 목표와 UNCRC와의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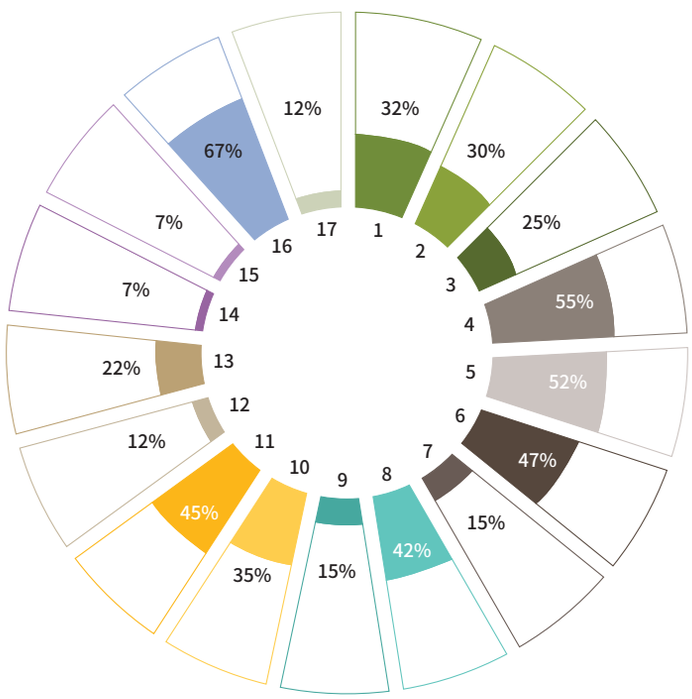

출처: 박은혜 외(2018). 아동권리관점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실행을 위한 기준 연구. p.44.
(UNICEF(2016f). Mapping the Global Go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저자 시각화)

6) UNICEF(2016). Mapping the Global Go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개발협력 이슈 |

주요 공여국 및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아동권리 이행 현황

OECD DAC 국가들 중에서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사업에서 아동 이슈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국가들과 한국의 ODA 정책 및 사업에서의 아동 이슈 현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요 공여국(벨기에,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아동권리 이행 현황 [7]

먼저 벨기에는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국제협력법에 개발협력의 모든 부문에서 아동권리가 적용되고 증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FPS Foreign Affairs, 2007), UNCRC 이행에 대한 약속 중 하나로 개발협력 중점분야에 UNCRC 4대 원칙[8]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적인 노력도 펼치고 있다(DGDC, 2007). 이러한 아동권리관점 반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아동권리가 중점분야 외 다른 크로스커팅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두 번째로 스웨덴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은 항상 스웨덴 원조의 주요 대상 그룹이었으며 이들을 권리주체자로 인식하면서 2002년에 개발협력에서의 아동권리관점 정책문서[9]를 마련하여 모든 전략에 아동권리관점을 적용하고 있다. 아동 보호 장치인 아동 세이프가딩 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비차별 정책 및 다양성에 대한 정책을 두었고, 개발협력에서의 아동권리 주류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등 아동권리를 주요 골자로 두어 실질적 이행을 도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공여국(벨기에,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아동권리 실현 노력	
벨기에 개발협력의 UNCRC 이행 노력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은 벨기에와 유럽연합의 중요 우선순위 중 하나이다. 매년 개최되는 UN 인권평의회(UN Human Rights Council)를 통한 아동권리에 대한 결의를 적극적으로 벨기에는 지지하며 아동권리에 대하여 파트너 국가들과 정기적으로 양자 간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벨기에는 이들이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UNCRC를 준수하고 국내법에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을 장려한다. 출처: FPS Foreign Affairs(2007).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p.7.
스웨덴 아동권리실현을 위한 10대 강령	· 아동을 먼저 · 아동에게 귀 기울이기 · 미래에 투자하기 · 누구도 소외하지 않기 · 모두를 위한 교육 · 여·남아에게 동등한 기회 · 모두를 위한 건강 · 전쟁 중 아동보호 · 에이즈 퇴치 · 아동착취 근절 출처: Sweden Ministry for Foreign Affairs(2001). The Rights of the Child as a Perspective in Development Cooperation.

출처: 박은혜 외(2018). 아동권리관점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실행을 위한 기준 연구. p.75, 87.

7) 박은혜 외(2018). 아동권리관점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실행을 위한 기준 연구. p.81, 87-89.
8) UNCRC 기본원칙은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으로 구성.
9) SIDA(2001). The Rights of the Child as a Perspective in Development Cooperation.

2.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아동권리 이행 현황

다음은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아동권리 이행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비준함으로써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가질 것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약속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협약 제4조에서는 비준국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시,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이행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한국 정부가 2010년 제정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향상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정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10], 2015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에는 외교부가 주관이 되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정책에 '아동'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였다.[11]

이를 위해 ODA 주요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인권전략(2013-2015)'을 발표함으로써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을 채택하고 인권 원칙을 사업과정에 구현하기 위한 최초의 정책문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조직적 측면에서도 지난 2018년 11월에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인권 경영을 실천하고 사업에서의 인권 내재화를 실천하기 위한 다짐을 공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사업 기획, 수행, 평가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HRBA 내재화 및 주류화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KOICA 내 아동권리 이슈 반영 현황
· KOICA 전체 분야별 지원실적을 보면, 아동을 주요 수혜자로 고려하는 교육과 보건의료 분야의 규모가 38.4% 차지함(2017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 일부 KOICA 내부 규정 – 개발협력연대(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 행동강령, 민관협력사업 심의과정, 약정서, 주의제재위원회 제재 종류,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에 관한 기준, 월드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 WFK) 봉사단 서약서 - 상에 아동보호 요소를 반영하였음[12]. · KOICA 인권전략(2013-2015) 내 인권기반접근 채택함으로써 아동도 고려 대상으로 언급하였으나, 이후 구체적인 아동권리관점 접근법, 전략 및 이행방안이 아직 부재한 상태임. · 인권전략(2013-2015)에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수립 시 국가별로 민주주의 및 인권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우며, 아동권리 관련은 보이지 않음.

실제로 지난 9월, 한국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이행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심의가 열렸다. 다양한 아동관련 이슈들 사이에서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아동권리 향상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과 현황에 대해 위원들이 수차례 질의를 던졌고, 이에 외교부가 대표로 답변하였다. 국내외 기업 활동 및 대외 경제협력 내 아동 세이프가딩,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이행하기 위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에 아동권리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계획, KOICA의 구제제도 이행 계획에 대한 질의를 받은 한국정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실행에 옮길 것을 권고 받았다.

굿네이버스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아동권리 이행 현황

1. 굿네이버스 미션과 아동권리옹호 전략 [13]

굿네이버스 사업은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고, 인권을 존중하며, 자립적 삶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과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기반하여 아동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주요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권리 실현'은 굿네이버스 3대 사업 추진 방향 중 하나이며, '아동 최우선의 원칙'은 핵심가치 중 하나로 굿네이버스의 모든 사업 활동에 적용되어야 하는 우선순위이다. 즉,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 기획,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전 단계에 고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굿네이버스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그리고 이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보호정책을 수립하여 아동 권리에 대한 존중과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제1항
11) 관계부처 합동(2015).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 p.112.
12) KCOC 아동권리실무그룹(2018).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의무: 아동 인권과 국제개발협력. p.38.
13) 굿네이버스(2018). 우간다/말라위 여아권리옹호사업 효과성 연구 결과 보고서. p.39-41.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사업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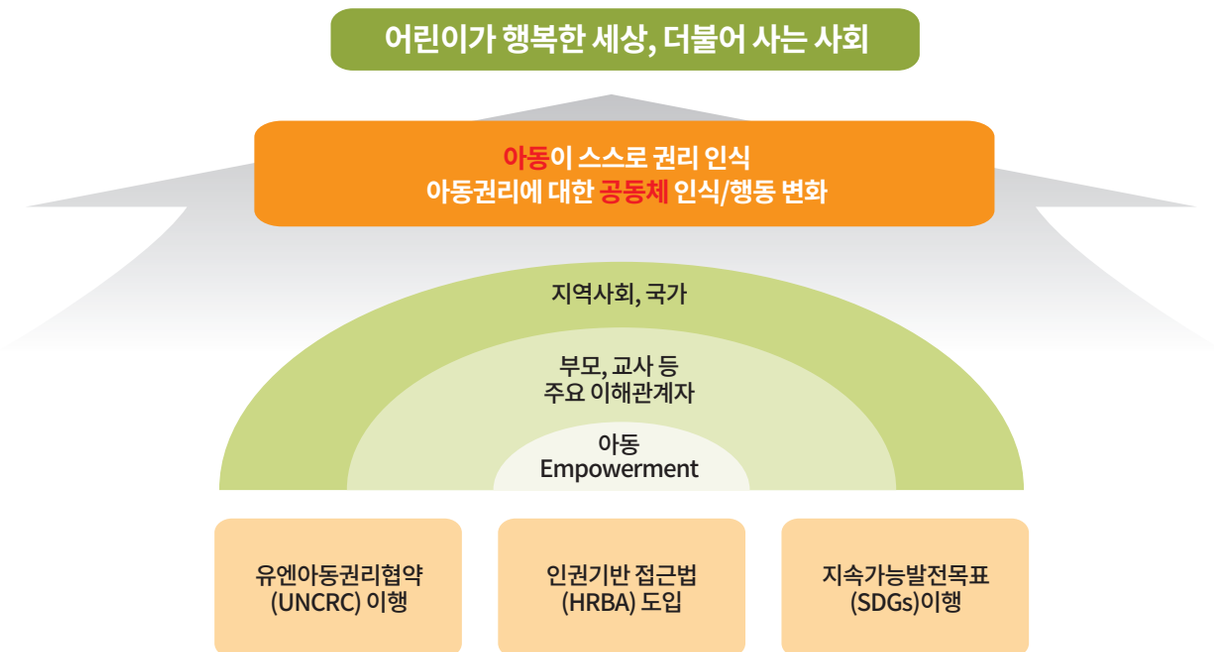

굿네이버스 국제개발사업 내 아동권리옹호사업은 아동이 주체가 되어 아동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법과 제도를 변화시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굿네이버스는 인권기반 접근을 모든 사업 전반 과정에 적용하여 지역 사회 내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아동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주변 이해관계자와 의무부담자들의 인식과 행동을 개선하고 그들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형태를 소개하자면 첫째, 각 활동지역에 학교 기반의 아동으로 구성된 조직 및 위원회를 두어 아동들의 총체적인 역량강화(empowerment)를 도모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또래클럽활동의 주요 특징은 아동들이 직접 주도하여 지역 또는 학교 내 문제 파악, 수요조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기간 동안 스스로 활동을 기획, 실행, 평가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클럽활동을 정착시키고자 선배가 후배에게 경험과 교훈을 전달하는 제도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넘어 아동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에 기여함으로써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국가, 지역별로 아동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 내 아동보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의 역량강화와 참여권 보장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한 변화에 집중한다. 지역 단위로는 지역 리더 또는 지역정부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 법령 개정과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힘쓰며, 국가 단위로는 유엔 메커니즘을 활용하거나 정부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기적인 아동 정책 모니터링 및 옹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개인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해 아동권리옹호사업 수행 시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아동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성장기의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모, 학교 교사 그리고 더 나아가 정책결정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가정, 학교, 지역 내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아동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 굿네이버스 국제개발사업에서의 아동권리 이행 활동

1) 몽골 아동권리교육-아동권리클럽-정책제언 연계 활동 [14]

몽골은 1990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비준하였고, 1996년 아동 권리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아동보호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지만, 몽골 전체 아동 3명 중 1명은 아직도 학대를 당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몽골은 아동의 학대 예방과 권리 향상을 위해서는 아동 및 부모, 교사, 지역공동체의 인지제고뿐만 아니라 정책과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제도 변화와 아동 권리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공개 창구를 통해 수집한 시민과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다수의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굿네이버스 몽골은 권리 주체인 아동과 그들의 권리를 이행하는데 의무가 있는 부모,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아동권리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몽골 울란바타르시 교육청, 가정아동청소년 개발청, 타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아동권리교육을 시행했다. 통계 결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몽골 전체 아동 1,230,454명(2018년 몽골 통계 기준) 중 385,494명(31.3%), 몽골 전체 성인 중 34,144명(1.7%)이 굿네이버스의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과 성학대 예방 교육, 학교 폭력 예방교육, 부모 교육 등 총 14개의 교육에 참여했다. 아동권리교육은 아동 권리 그림 카드나 활동지, 만화영화, 게임, 역할극 등 이론 중심이 아니라 아동들의 재미와 관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활동으로 구성된 교육 도구를 다채롭게 활용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인형극 진행 모습

아동권리교육 진행 모습

또한 학교 내 아동권리침해 감소, 폭력 예방, 아동권리 인식 증진을 위해 아동들이 직접 주도하는 아동권리클럽 활동을 조직하여 울란바타르시, 움니고비 아이막(Umnugovi province,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 다르항올 아이막(Darkhan-Uul province)의 총 30개 학교에서 총 1,305명의 멤버가 아동권리클럽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아동권리클럽에 참여한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 폭력에 대하여 인식하고 아동 권리보호와 학교 폭력 감소를 위한 의견을 교사와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아동과 성인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교내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옹호 활동들을 통해 실제 학교폭력, 아동 간 분쟁, 아동 권리 침해 비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아동권리클럽 견학 모습

학교폭력예방 옹호활동 모습

14) KCOC(2019). 국제개발협력 현장사업 정책연계 사례집: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의 힘. p.187-218.

마지막으로 굿네이버스 몽골은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국가, 지역 단위의 정책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각종 정책제언 및 옹호활동을 진행했다. 2016년 몽골 아동, 학부모, 보호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의 기준을 정의하고 향후 대안 마련을 위해 몽골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전국 단위로 실시한 '아동권리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학교, 부모 및 보호자들에 대한 구체적 제언을 담은 아동권리 실태조사서를 제작하였고 영어와 한국어로도 번역해 발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를 70개 웹 사이트와 11개 방송국에도 보도하였다. 몽골 인권위원회에서는 매년 국회에 제시하는 '인권과 자유' 보고서 16번째 조항에 실태조사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시행명령을 내놓는 등 아동권리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의 시발점이 되었다.

아동권리 실태조사 국정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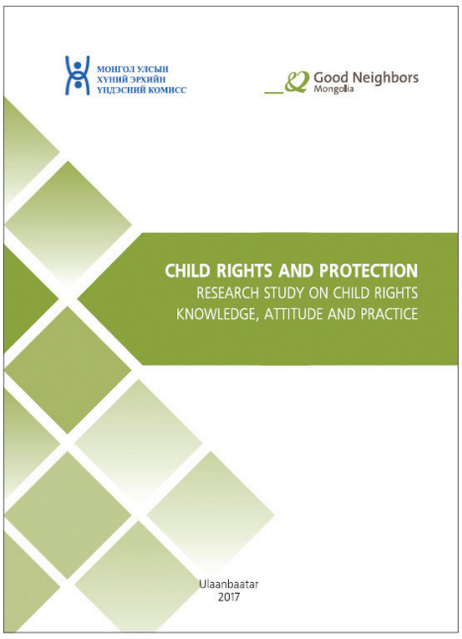

아동권리 실태조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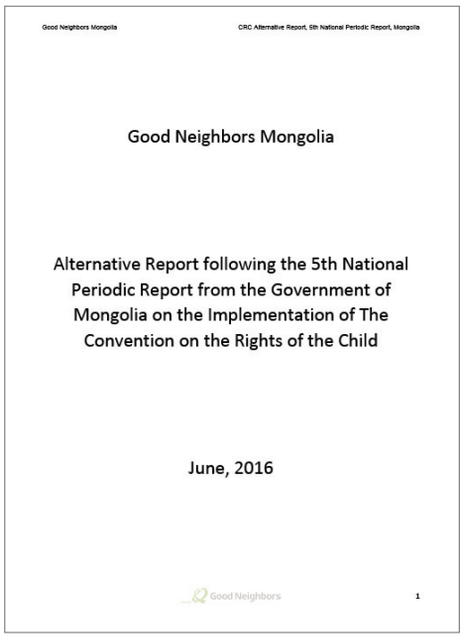

유엔에 제출한 굿네이버스 몽골 NGO 보고서

또한 2016년 7월 굿네이버스 몽골은 아동권리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NGO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 해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사전심의'에 참석하여 몽골 아동의 시민권 및 표현권의 자유, 기초건강과 복지, 교육권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제언내용을 위원회에 전달하고, 몽골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후 2017년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최종 견해에 우리 단체의 제언사항 중 12개 항목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이행을 위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옹호활동

굿네이버스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파트너 국가 정부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다양한 아동권리 이행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각국의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제언활동을 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경우, 비준 후 첫 2년, 그리고 그 이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아동권리이행현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제출한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측 아동권리이행 현황분석 및 제언사항을 담은 민간보고서가 추가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게 제출되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 및 민간단체 관계자를 초청한 사전심의가 열린다. 이러한 사전심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초청하여 본심의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국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아동 및 시민사회)들이 위원회에게 사전에 제출한 민간보고서 내용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해당국의 아동권리 이행 현황에 대해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 정부를 초청하여 질의하는 본심의 이후 위원회에서는 해당국가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최종 권고사항을 제시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국가는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이행 심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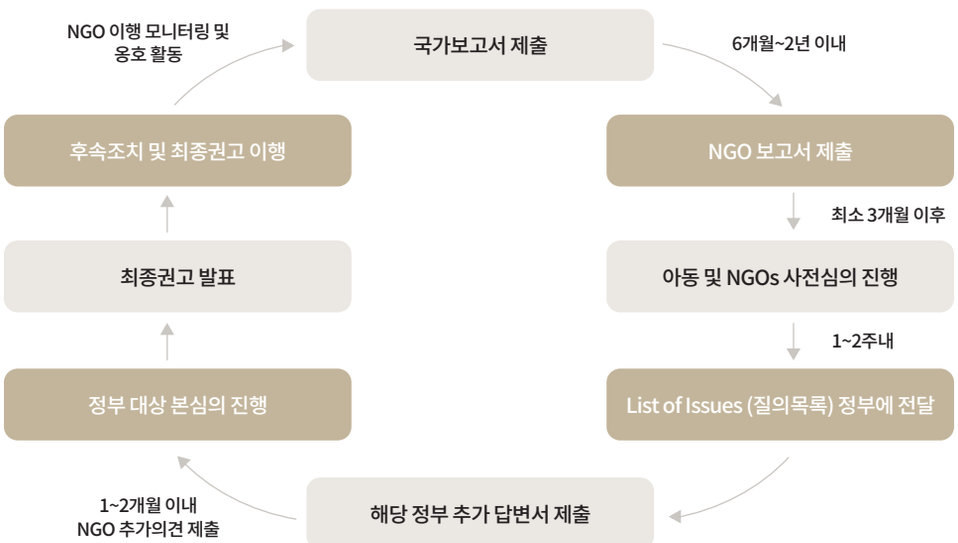

올해는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자,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을 심의하는 제 5, 6차 심의가 이루어지는 해이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게 국내의 아동권리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위원회로부터 향후 노력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을 받았다. 굿네이버스는 2018년에 다른 민간단체들과 함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게 제출한 민간보고서[15]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2월 제네바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사전심의에 참석하고 9월 본심의에도 참석하여 이슈 제기를 위한 심의위원들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이슈브리프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정책옹호활동을 진행하였다.

제 5,6차 대한민국 UNCRC 이행 사전심의 NGO 준비회의(2019년 2월)

제 5,6차 대한민국 UNCRC 이행 본심의 진행 현장(2019년 9월)

15) 굿네이버스는 2018년 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두 개의 제 5,6 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작성과 제출에 참여했다. 1)48개의 단체들과 연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보고서' 2)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아동권리실무그룹과 연대한 '한국의 유엔아동권리 협약 이행 의무: 아동인권과 국제개발협력' 민간보고서

KCOC 아동권리실무그룹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간보고서

본심의 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배포한
국제개발협력 이슈브리프(KCOC 아동권리실무그룹)

특히 국제개발협력 관련해서는 아동권리관점에서 볼 때 인도적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아동 학대, 방임, 폭력, 착취 등을 야기할만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지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의 유무상원조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EDCF)은 개발협력 활동 과정에서 아동권리 침해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세이프가딩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도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범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아동권리기반의 국제개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이 시급함을 제언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전달한 질의목록에서 "아동권리와 SDGs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 강조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국제개발협력 관련 다음과 같은 제언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한국 ODA 원조가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준수할 것
- 아동권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당사국 및 해당 개발 협력국에 대한 본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국제개발원조 정책과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적절히 통합할 것
-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아동권리 영향진단,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을 포함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것
- 아동권리 실현 및 보호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 아동권리 침해를 보고하고 해결하도록 강력히 권고함

출처: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9). CRC/C/KOR/CO/5-6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5,6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권고사항.

Recommendations

향후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아동권리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제언

아동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공간 및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권리 주체인 아동들이 교육을 통해 학습한 사항을 실생활에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현황에 대해 인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넘어 아동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이행 과정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에 기여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해야한다.

민간단체(NGO)들이 지역 내 실질적인 아동권리증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동 및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아동권리 인지 제고를 통한 지역, 국가적 차원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지역 내 실질적인 아동권리증진을 위해서는 주체가 되는 아동 및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증진을 통한 친화적인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정책변화에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전략, 정책, 법이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아동권리증진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정부와 타 관련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행해야 한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아동 세이프가딩 정책을 도입하고 모든 사업 전반 과정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 보호 요소가 KOICA 내부 지침에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실정이며,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EDCF도 세이프가드 정책을 2016년 도입하였으나 이행 책임의 주체를 협력국으로 한정하거나 필수 지침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소극적인 방식이다. 모든 한국 ODA 정책과 사업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아동권리 영향 평가 실시, 사업 중에도 정기적으로 위험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실제 권리 침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세이프가드에 대해 사업 수행 주체부터 시작하여 현지 아동 및 주민들 대상으로 인지 제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 내 아동권리관점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KOICA는 인권전략(2013-2015) 이후, 사업 단위에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고려한 인권기반접근(HRBA)을 구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세부지침 또는 이행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한국의 모든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UNCRC 원칙을 반영하고 어떤 아동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관점을 정책, 사업 전반에 통합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때,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를 넘어 ODA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아동권리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약어

줄임말	영문명	국문명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
DAK	Development Alliance Korea	개발협력연대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HRBA	Human Rights-based Approach	인권기반접근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관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UNCRC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니세프(유엔 아동 기금)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15).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 p.112.
굿네이버스(2018). 우간다/말라위 여아권리옹호사업 효과성 연구 결과 보고서.
박은혜 외(2018). 아동권리관점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실행을 위한 기준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sc.or.kr/news/reportView.do?NO=70147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9). CRC/C/KOR/CO/5-6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5,6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권고사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 CRC/GC/2003/5. 일반논평 제5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제4조, 제42조, 제44조 6항). p.14.
한국국제협력단(KOICA)(2012). KOICA 인권 분야 지원전략(2013-2015).
한국국제협력단(KOICA)(2017).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KCOC 아동권리실무그룹(2018).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의무: 아동 인권과 국제개발협력(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민간보고서). p.38.
KCOC(2019). 국제개발협력 현장사업 정책연계 사례집: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의 힘.

Belgian FPS Foreign Affairs(2007).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p.7.
Joining Forces(2019). Thirty years or child rights, and the unfinished agenda(A Second Revolution). p.46.
Save the Children(2019). Global Childhood Report 2019.
Sweden Ministry for Foreign Affairs(2001). The Rights of the Child as a Perspective in Development Cooperation.
UNICEF(2016). Mapping the Global Go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CEF and the Global Coalition to End Child Poverty(2017). A world free from child poverty: A guide to the tasks to achieve the vision.

굿네이버스